

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07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망우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. 12. 31. 만료 예정임에 따라,
- 나.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고,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
○ 추진의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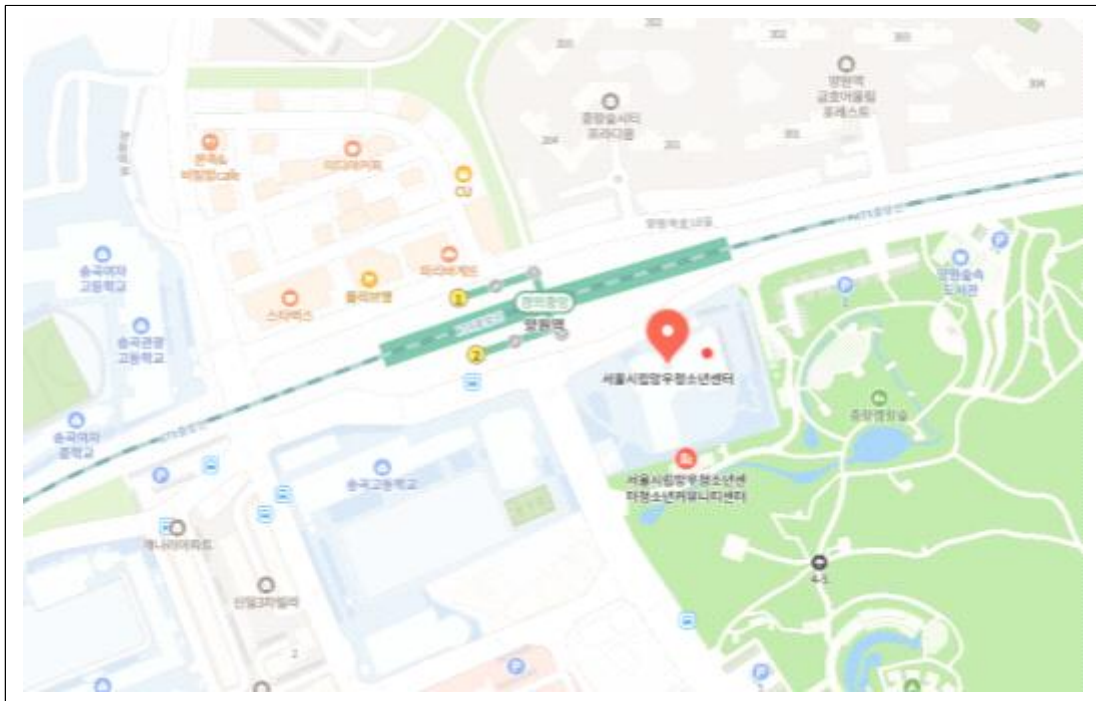
- 시립망우청소년센터는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,
- 창의적 체험활동·진로직업 탐색 등 청소년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,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.
- 또한 「청소년 기본법」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-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고,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
-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
- 학교,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
- 청소년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중랑구 송림길 156
- 개관일자 : 2006. 4. 4.
- 시설규모 : 대지 7,710 m^2 / 연면적 5,150 m^2
- 주요시설 : 미디어 스튜디오, 메이커 스페이스, 힐링테라스, 소극장, 수영장, 체육관, 캠핑장 등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: 3년(2026.1.1. ~ 2028.12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4,954백만원('25년)
- 산출근거
 - 인건비 1,448백만원, 운영비 698백만원, 사업비 2,332백만원, 사업외지출 및 기타 476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
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-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협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1.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
 2. 위탁기간
 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 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5. 노동자에 대한 고용·노동조건 개선노력
 6. 지도·점검,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
 7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태영 (☎02-2133-4124)